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기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됨.

(세정13407-1259, 2000.11.01)

7. 1구내의 고급주택과 일반건축물이 있을 경우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면적 산출

【질 의】

업무상 1999년 7월에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했는데, 최근 구청으로부터 취득세 증가 방침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주장하는 부과기준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귀 부의 의견을 구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76조 ③항 1호의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서 울타리로 둘러싸인 1구내 부지에 소유주가 같고 서로 접한 수개 필지 안에 고급주택과 임대용 건축물이 각각 1동씩 있는 경우에, 고급주택 부속토지 면적의 산정 기준을 「1구내 전체 토지 면적×고급주택 연면적/(고급주택 연면적+임대용 건축물 연면적)」으로 보아도 되는지, 아니면 「1구내 임대용 건축물이 소재한 당해 지번만 제외하고 1구내 나머지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신

1구내에 고급주택과 일반건축물이 있을 경우 각각의 부속토지면적은 토지지번과 관계없이 1구내의 전체토지면적을 고급주택과 임대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함이 타당함.

(세정13407-1281, 2000.11.07)